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관광과장 유상한

가. 제안이유

「마포구가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 등 우리 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, 지역관광 발전의 주체로서 다양한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기능 (안 제3조 및 제4조)
 - 설립 허가하는 경우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 이해
관련자 고루 참여

○ 관광협의회 기능

-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
-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-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- 마포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
-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마포구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 수행
-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□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(안 제6조)

○ 협의회 회원들의 자발적 구성

○ 협의회 위원 구성

- 이사 : 10명 이상 20명 이하(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)
- 감사 : 2명

□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(안 제13조)

○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6. 9. 13. ~ 10. 3. 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구의회 및 관련부서에서 “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 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”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12조 (실무협의회)제2항을 신설하였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조례 제정 목적이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미래의 마포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이 나아갈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관광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

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를 설립·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지역관광 민관협력 체계를 조기에 정착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, 다만, 조례 시행 후 마포구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